2023년도 국정감사계획

2023. 10. 11.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 일정 및 장소	5
6.	주요 감사사항	7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	7
8.	감사요령	8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10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기관의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감시·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3년 10월 11일(수) ~ 10월 26일(목) : 16일간

3. 감사대상기관:총 69개

가. 위원회 선정:63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국가기관	(1) 교육부 (2) 국가교육위원회 (3) 국사편찬위원회 (4) 국립특수교육원 (5) 중앙교육연수원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7) 국립국제교육원 (8)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9) 강원대학교 (10) 경북대학교 (11) 경상국립대학교 (12) 부산대학교	(13) 전남대학교 (14) 전북대학교 (15) 제주대학교 (16) 충남대학교 (17) 충북대학교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서울교육대학교 (21) 한국교원대학교 (22) 대구교육대학교 (23) 한경국립대학교	23개
시·도 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인천광역시교육청 (4) 광주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대구광역시교육청 	 (10)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경상남도교육청 (12) 경상북도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14) 전라북도교육청 (15) 충청남도교육청 (16) 충청북도교육청 	17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 경기도교육청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기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한국장학재단 (4) 동북아역사재단 (5) 한국학중앙연구원 (6) 한국사학진흥재단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 한국고전번역원 (9) 한국연구재단 (10) 서울대학교병원 (11) 서울대학교병원 (12) 충남대학교병원	(13) 충북대학교병원 (14) 경북대학교병원 (1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6) 강원대학교병원 (1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8) 전남대학교병원 (19) 전북대학교병원 (20) 제주대학교병원 (21) 부산대학교병원 (22) 부산대학교병원 (23)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37ዝ

나. 본회의 의결 대상:6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유관기관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6개
	(3) 한국교직원공제회	(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

	◇ 위원장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감	〉 기천경 · 삼설인 (의철의친구경) 	
72	◇ 위원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위원 : 이태규(국민의힘)
_	♥ 위된 . 점 8호(디콜에인 1 8) 강득구(")	→ 귀현 · 의대 (국 신크 함) 권은희(")
사	장되기(/ / / / / / / / / / / / / / / / / / /	서병수(")
	도종환(")	정경희(")
위		
	L で 可()	2.0511(
0]	/100(추경호(")
원		스 이이 기다.그(네크 레디 레)
	유기홍(")	◇ 위원 : 김남국(비교섭단체)
		△ ol ol H zl zl/16ol)
	◇ 위원회 공무원(13인)	◇ 의원보좌진(16인)
사	-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 전문위원 이지민	◇ 정책연구위원
무	- 행정실장 김정규	• • • • • • • • • • • • • • • • • • •
보	- 입법조사관(3급) 조남희	-더불어민주당(4급상당) 김현나 그미이하(2구사다) 기조시
포	- 입법조사관(4급) 전형진, 황현희	-국민의힘(2급상당) 김종신
조	- 입법조사관(5급) 오규환, 박원일,	-국민의힘(4급상당) 김연희
	김수환	
자	- · · · - 입법조사관보 강희영, 황광우	^ ふっろ 및 司(COl)
	- 주무관 김선이, 최영숙	◇ 속기주무관(6인)

나. 지방감사 분반

	감사 1반	감사 2반			
	◇ 감사반장 : 김철민 위원장	◇ 감사반장 : 이태규 간사			
감	◇ 감사반원	◇ 감사반원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사	도종환(더불어민주당)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റി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위	권은희(국민의힘)	서병수(국민의힘)			
	정경희(국민의힘)	조경태(국민의힘)			
원	추경호(국민의힘)				
	김남국(비교섭단체)				
	9인	7인			
	총 16인				

5. 감사 일정 및 장소

□ 감사대상기관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69개

날짜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1.(수)	10:00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차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8개 기관)	국회				
10.12.((목)		감 사 준 비				
10.13.(금)	10:00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3개 기관)		국회			
10.16.((월)		감 사 준 비				
10.17(화)	10:00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6개 기관)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7개 기관)	감사1반 전북대	KTX, 버스 등	1박	
10.11(31)	14:00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관)	감시2반 경북대	KTX, 버스 등	17	

날짜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00	<u>충북대학교</u> ,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4개 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5개 기관)	감사1반 충북교육청	KTX, 버스 등		
10.18(수)	14:00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4개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3개 기관)	감사2반 부산교육청	KTX, 버스 등	1박	
10.19.0	[목)	감 사 준 비					
10.20.(금)	10:00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경국립대학교 (4개 기관)		국회			
10.23.(월) 감사준비		감 사 준 비					
10.24.(화) 10:0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8개 기관)		국회			
10.25.(수)		감 사 준 비					
10.26.(목)	10:00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국회	[종합김	사]	

^{*} 밑줄은 증인선서 대표 기관임.

^{*} 감사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사항

-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다.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 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공통요구자료 포함)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배부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에 준비하여야 함.

【업무현황 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내용】

- 2023년 업무현황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22년 및 2023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 2022년 및 2023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2년 및 2023년 민원처리 현황
-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 기타 주요사항
- ※ 업무현황 자료에 전문용어·약자 또는 영문약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설(주석)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명기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 등으로 실시함.
- (2)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3) 감사는 공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4)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함.
- (5) 그 밖에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나. 자료제출 요구

- (1)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 자료의 제출 요구는 위원회(감사반 포함)의 의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로 할 수 있음.
- (2) 감사위원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감사대상기관 등에 서면으로 요구함.
- (3) 수감기관 등이 제출하는 자료는 컴퓨터 기록장치 중 <u>USB</u>로 제출하도 록 함.

다. 증인 ·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 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및 사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 (나) 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국립대학 등은 당일 감사 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집행간부급
- (2) 증인 출석요구 의결 후 감사 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요

구된 것으로 함.

- (3)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음.
- (4)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오후 2시부터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함.

라. 선서요령

- (1)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여야 함.
-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이 기립하여 대표로 받음.
-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5)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마. 감사진행 순서

- (1) 감사개시 선언
-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 (3) 증인 선서
-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0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0 현황설명
 - o 세부사항 설명
-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 가. 국정감사 기간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나. 감사위원에게 간사 협의를 거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함.
- 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재작성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를 전체회의에서 의결(채택)함.